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변경사항 안내

(2024. 12. 3.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부)

□ 안내 배경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법률 제20380호>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 공포('24.3.19.) 및 시행('24.9.20.)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 자격취득 제한 내용 신설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취득 결격사유 조항 신설 이유]

- ▶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
- ▶ 또한,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유사입법례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를 신설 (현재 교사 자격 및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면허 취득 시 결격사유 적용 중)

□ 법률 개정 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 [법률 제20380호, 2024.3.19. 개정, 2024.9.20. 시행]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적용대상 및 기준

-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2조<법률 제20380호>에 따라 이 법 시행(24.9.20.) 이후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신청한 사람
 - 어린이집 원장(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40인 미만) 또는 보육교사(1, 2, 3급) 자격검정을 신청한 사람
 - *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자격검정 신청자는 해당 없음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에서 '24.9.20. 이후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 완료한 사람부터 적용
 - * '24.9.20. 이후 자격증 인터넷 신청 완료(발급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결제 완료)한 사람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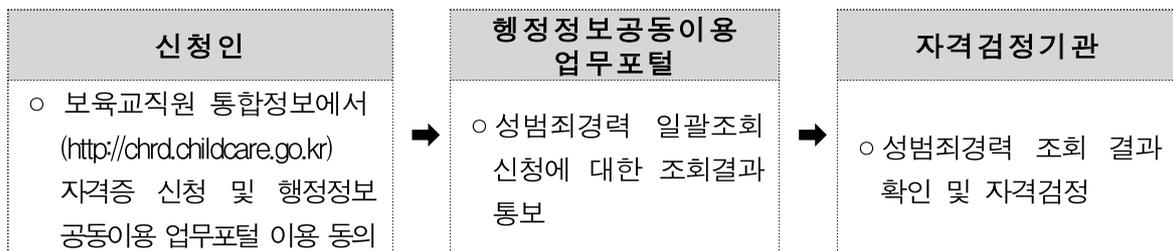
□ 결격사유 확인 절차

① 성범죄경력 확인

- 보육교직원 자격증 신청 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자격증 인터넷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법 제21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야 함
 - ※ 성범죄경력 조회 관련 서류 개별 발급 및 제출 불가
 - ※ 외국국적자 결격사유 확인 제출 서류(참고)

성범죄경력 확인 절차(일괄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②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 (제출서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서류 유효기간) 자격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 (검사방법)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 일부 치료 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검사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추가 진단 등을 통해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 (검사기관) 검사 가능 여부 및 검사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 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
 - * www.hikorea.go.kr 탑재된 법무부 지정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참조 (www.hikorea.go.kr → 뉴스·공지 → 1.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 자격 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차검사*	음성 반응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양성 반응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시 →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참고

국별 외국인 범죄경력 사실유무 조회 자료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외국 국적자는 결격사유조회 제출 서류를 발급받아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한국어 및 영어가 아닐 경우 번역공증 필수)

*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홈페이지: www.kuksiwon.or.kr → 자주하는 질문 → 기타. 외국국적자 결격사유)

국가	관련서류명	발급처 ※
뉴질랜드	AFFIDAVIT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대만	성명서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말레이시아	신원조회 증명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몽골	범죄경력 조회서	중앙 경찰청
미국	AFFIDAVIT	주한 미국 대사관
벨기에	신원조회 증명서	주한 벨기에 대사관
브라질	범죄경력 증명서	브라질 사법부(해당 지역 연방 일급 법원)
아르헨티나	범죄사실 확인서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일본	범죄경력 증명서	일본경찰청
	신분증명서	해당시청
중국	미수형사처분공증서	해당 시 공증처
캐나다	AFFIDAVIT	주한 캐나다 대사관
호주	범죄경력 증명서	호주 경찰청
베트남	범죄경력 증명서	중앙 직속시 또는 성 사법청

※ 서류 발급처는 해당 국가 및 대사(영사)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